



CEO Brief

2021.11. 제2021-21호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와 제도개선 방향¹⁾

요약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 진료비(1조 원)의 34.8%에서 64.5%로 추산됨. 경상환자의 29.3%는 과잉진료 의심 그룹으로 분석되었고, 이들의 진료비는 정상진료를 받은 일반 그룹의 3.7배, 진료일수는 3.1배 높음. 그리고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미상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 조정, 그리고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함

○ 2019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 6,468억 원, 자동차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 3,484억 원으로 분석되었고 대당 보험료 기준으로는 1.7~3.1만 원임

• 금융위원회(2019)는 과잉진료 규모를 5,400억 원, 보험료 2~3만 원으로 추산함²⁾

〈표 1〉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 추정 결과(2019년 기준)

허위청구(억 원)	치료비 부풀리기(억 원)		과잉진료 ¹⁾ (억 원)	과잉진료 영향		
				손해율(%)		대당 보험료(원)
				대인	증권	
1,115 (11.1%) ²⁾	자동차보험 진료일수 기준	2,368 (23.7%)	3,484 (34.8%)	6.9	2.5	16,800 (2.4%) ³⁾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	5,353 (53.5%)	6,468 (64.5%)	12.9	4.6	31,200 (4.4%) ³⁾

주: 1) 과잉진료 규모는 허위청구(사고로 인한 손해가 없지만 대인배상 청구와 치료비 부풀리기(적정 치료비 이상 진료를 받는 행위)를 합한 금액임

2) 팔호 안은 상해등급 12급, 14급의 경상환자 진료비(약 1조 원)와 대당 평균보험료(약 71만 원) 대비 각 항목별 구성비임

3) 대당 평균보험료(약 71만 원) 대비 각 항목별 구성비임

4) 과잉진료비는 합의금 등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과잉진료의 사회적 비용은 추산된 규모보다 더 클 수 있음

1) 이 자료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통계팀과 공동연구한 결과임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9. 30),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CEO Brief

-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료수가와 보상제도인데, 보상제도는 진료 일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일수 차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의 30%(약 3,000억 원) 내외로 나타남
 - 김진현(2005)은 자동차보험에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심사할 경우, 2003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19.7%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함³⁾
 - 진료비가 클수록 향후치료비 등 합의금이 높아지는데, 진료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선택하여 진료일수가 높아짐
 - 경상환자는 입원, 한방진료 여부, 의료기관 유형, 진료일수를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어 과잉진료 유인이 상존함
 - 과잉진료 의심 그룹은 비급여 수가 비중이 높은 한방 병·의원 이용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과잉진료 의심 그룹의 진료행태

구분	일반 그룹(A)	과잉진료 의심 그룹(B)	비교(B/A)
진료 인원 비중(%)	70.7	29.3	-
1인당 진료비 (천 원/인)	359	1,333	3.7
진료일수 (일/인)	5.6	17.2	3.1
1일당 진료비 (천 원/일)	64	78	1.2
입원율 (%)	22.6	42.7	1.9
한방 병·의원 이용률 (%)	40.5	84.5	2.1
종합병원 이상 이용률 (%)	15.4	21.7	1.4
장기 통원(2주) 비율 (%)	4.7	32.1	6.8

-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의 진료수가 일원화, 한방 비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척추 염좌,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 존재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⁴⁾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yongsik.jeon@kiri.or.kr

3) 김진현(2005. 3. 2),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4) 제도개선과 관련하여는 전용식·양승현·김유미(2020),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0-11, 보험연구원을 참조하길 바람